

(대통령후보자등)·(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)·(당대표경선후보자등)·(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)
후원회 지정신고서

문서번호

지정권자	
지정내역	
지정연월일	년 월 일

위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「정치자금법」 제7조제3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대통령(예비후보자)·(후보자)○○○후원회대표자	직인
○○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○○○후원회대표자	직인
○○당 대표 경 선 후 보 자 ○○○후원회대표자	직인
○○당 ○ ○ ○ 경 선 후 보 자 ○○○후원회대표자	직인
○○시·도지사(예비후보자)·(후보자)○○○후원회대표자	직인
○○구청장·시장·군수(예비후보자)·(후보자)○○○후원회대표자	직인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※ 구비서류

- 후원회지정서 1부
- 인영서 1부
- 경선후보자등록 확인서류(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에 한함) 1부

- 주 1. 지정권자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·대통령예비후보자·지방의회의원을 말합니다.
2. 지정내역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.
- 가. "국회의원○○○후원회를 (대통령예비후보자○○○)·(대통령후보자○○○)·(○○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○○○)·(○○당대표경선후보자○○○)·(○○당○○○경선후보자○○○)후원회로 지정"
- 나. "대통령예비후보자○○○후원회를 ○○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○○○후원회로 지정"
- 다. "○○시·도의회의원○○○후원회를 (○○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○○○)·(○○당대표경선후보자○○○)·(○○당○○○경선후보자○○○)·(○○시·도지사예비후보자○○○)·(○○시·도지사후보자○○○)후원회로 지정"
- 라. "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○○○후원회를 (○○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○○○)·(○○당대표경선후보자○○○)·(○○당○○○경선후보자○○○)·(○○구청장·시장·군수예비후보자○○○)·(○○구청장·시장·군수후보자○○○)후원회로 지정"
3. "인영서"는 별지 제4호서식의 <별지>에 의합니다.